

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



태블릿PC, 키보드 등
방송통신기자재는

적합성평가(KC인증)를 받아야 합니다.



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한

해외직구 제품은 1인당 1대(모델별)

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.



면제받은 제품을 **반입일 1년** 이내 판매 시
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